소관부서 : 자치행정과

제정 1996 · 3 · 1 규칙 제 10호 개정 1998 · 10 · 19 규칙 제136호 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 개정 2001 · 12 · 6 규칙 제234호 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 개정 2009 · 9 · 30 규칙 제401호 일부개정 2022 · 9 · 30 규칙 제736호 (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09・9・30, 2022・9・30〉

- 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,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. 다만,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- 1. 시장
 - 2.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
 - 3.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
 - 4. 「시 재무회계규칙」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
 - 5.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·국·과장,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〈개정 2001·12·6〉
 -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사무의 인계인수)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

-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. 다만,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(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,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.
- ③ 같은 실·국·과·담당관 내에서 상·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수 있다. 〈개정 2001·12·6〉
- 제4조(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)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 -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·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,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.
 -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,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"별도 ○○대장 및 ○○규정에 의한다."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)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6조(사무인계인수결과 보고)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7조(사무인계서 작성단위) ① 실·국·과장, 담당관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실·국·과·담당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담당관·국·과가 없는 경우에는 과·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. 〈개정 2001·12·6〉

-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, 재정, 회계, 기구 및 인력, 보존문서, 장비,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·담당관·과·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1·12·6〉
-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, 확인자는 소관·실·국·과장, 담당관 또는 작성자가 된다. 〈개정 2001·12·6〉
-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, 대책,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.
- 제8조(사무인계인수의 입회)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,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 위에 있는 자로 한다. 다만, 시장의 사무인계 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·국·과·담당관·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지정하는 자로 한다. 〈개정 2001·12·6〉
- 제9조(사무인계인수 거부)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)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.
 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

업무변경담당 실·담당관·과·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.

〈개정 2001 · 12 · 6〉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1998·10·19 규칙 제136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〈2001·12·6 규칙 제234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〈2009・9・30 규칙 제401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2·9·30 규칙 제736호,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 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

항 목

- 1. 시정방침(전임자)
- 2. 기구조직현황
- 3. 정ㆍ현원조서
 - 3-1 정·현원표
 - 3-2 직급별 정·현원표
- 4. 사무분장표
- 5. 역점추진업무목록
- 6. 중요 지시사항 목록(대통령, 총리, 장관, 지사 등)
- 7. 중요 미결업무 조서
- 8.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
- 9. 요 계속추진 대상 업무 조서
- 10.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
- 11. 소송계류중인 사항
- 12. 관인, 공인목록
- 13. 보존문서 목록
- 14. 비밀소유 현황
- 15. 서류 및 장부목록
- 16. 관사 비품목록
 - 16-1 관사 비품목록
 - 16-2 사무용 비품목록
 - 16-3 도서목록
- 17. 중요 소모품 목록

항 목

18. 장비목록

18-1 행정장비목록

18-2 건설기타장비 목록

19. 차량목록

20. 재고 물품조서

20-1 유류 수불조서

20-2 약품 수급조서

20-3 양곡 수불 현계표

20-4 기타 자재 수급조서

21. 비축물자 수급조서

22. 재산 조서

23. 채권, 채무조서

23-1 채권조서

23-2 채무조서

24. 세입세출 예산 현계표

24-1 세입예산 현계표

24-2 세출예산 현계표

24-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

25.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

26.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

27. 적립금 조서

28.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

29. 보조금 수지 현계표

30. 임시일상경비 수지 현계표

31.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 의견

32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[별지]

사 무 인 계 인 수 서

이 천 시

[별지]

○ ○ ○ 사 무 인 계 인 수 서

- 1. . . 현재 이천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 인수함.
- 2.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.
- 3.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.

○ 인계자: 전직위 성명 ①

○ 인수자: 직 위 성명 ①

○ 입회자 : 직 위 성명 ①

[별지 제1호서식]

시 정 방 침(전임자)

시 정 방 침	세 부 시 행 방 침

위 사실을 확인함

확인자 : 직 위 직 급 성 명 ①

[별지 제2호서식]

기 구 조 직 현 황

구분	본청 사업소				업소	비고
1 元	국	실·과	담당	실·과	담당	비포
본청						
읍면						
동						

※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

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.

확인자: 직위 직급 성명 **(1)**

[별지 제3-1호서식]

정ㆍ현 원 표

구분	총원		일병		벼저	기능	7.8	전문	기타	
丁七	중된	소계	본청	사업소	읍·면·동	글 28	/16	1 元名	신판	714
정원										
현원										
결원										

위 사실을 확인함

확인자 : 직 위 직 급 성 명 ①

[별지 제3-2호서식]

직 급 별 정ㆍ현 원 표

기관별		합계			본청		,	사업소		읔	· 면 ·	동
직급별	정원	현원	결원	정원	현원	결원	정원	현원	결원	정원	현원	결원
합계												

위 사실을 확인함

[별지 제4호서식]

사 무 분 장 표

※직원에 한하여 작성함

직명	성명	분장사무	담당일자
	직명	직명 성명	직명 성명 분장사무

※ 담당관·국·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「이천시 직제 규칙」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확인자: 직위 직급 성명 ①

[별지 제5호서식]

역 점 추 진 업 무(목록)

주관부서	기 대	내	8	무저	현황	н] –	
구선구시	건명	시행년도	행년도 사업개요 목적		연광	비고	

위 사실을 확인함

[별지 제6호서식]

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

지시	기ᅯ사체	주관부서		
일자	건명	내용	신식경광	ナゼナ 小
		지시 일자 건명		진척상황

Δì	21 21 O	취시	구기
커	사실을	왁인	앆

확인자 : 직 위 직 급 성 명

[별지 제7호서식]

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

소관별		사업	내역		추진상황	미결사유	예정 완료시기
조선일	소관별	사업량	사업비	시행기간	(진도)		완료시기

위 사실을 확인함

[별지 제8호서식]

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

고야	소 관	사		공약					추 사	진 항	미경	급 후
공약 구분	소관 부서	ਨੁਧ ਸੁତ	공 약 자	일 시	장 소	내 용	대상지역 또는주민	소요 예산	내 용	진 도	미결 사유	금후 처리 방안
대민												
대기관												
대내												

위 사실을 확인함

확인자 : 직 위 직 급 성 명

[별지 제9호서식]

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

	소관	-1-1	내	용	2) 2)	계속추진목적	예정
,	소관 부서	건명	시행년도	사업개요	현황	또는 사유	완료시기

위 사실을 확인함

[별지 제10호서식]

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

소관별	건명	내용	현재 진행 상황

의	사식은	화이	하

확인자 : 직 위 직 급 성 명

(1)

[별지 제11호서식]

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

사건명	사건 개요	당시	·사	최초	.제소	진행상황	소관 부서	
가신경	개요	원고	피고	일자	관할법원	신생경령	부서	

위 사실을 확인함

[별지 제12호서식]

관 인 · 공 인 목 록

명칭	수량	규격	재료	신조또는 개각일자	주용도	관수또는 사용부서

- ※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
- 위 사실을 확인함

확인자 : 직 위 직 급 성 명

(1)

[별지 제13호서식]

보 존 문 서 목 록

국・과별	합계	영구	준영구	10년	5년	3년	1년
계							

※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

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[별지 제14호서식]

비 밀 소 유 현 황

등급별		刊	밀		대외비	수시키케	nj =
국과별	계	I 급	Ⅱ급	Ⅲ급	내외미	급이자재	비고

※ 내역은 별도 담당관·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확인자 : 직 위 직 급 성 명

[별지 제15호서식]

서 류 및 장 부 목 록

실과별	편찬년도	서류장부명	책수	보관장소	비고

위 사실을 확인함

관 사 비 품 목 록

관사비품목록(정원 수, 장비 등 포함)

※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.(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)

위 사실을 확인함

. . .

확인자:직위 직급 성명

[별지 제16-2호서식]

사 무 용 비 품 목 록

※ 별도 실·국·과별 비품대장과 같음

위 사실을 확인함

. . .

확인자:직위 직급 성명 ①

[별지 제16-3호서식]

도 서 목 록

소 관 별	총 수 량	비고
계		

※ 명세는 별도 실·국·과별 도서대장과 같음

위 사실을 확인함

확인자 : 직 위 직 급 성 명

(1)

[별지 제17호서식]

중 요 소 모 품 목 록

실과명	프며	구경	다이	수량 불출량 현		청케그	과부족	비고		
교사 3	五 0	🤄	인케	계	전년도이월	수입	ささる	원세포	475	H1-12

위 사실을 확인함

확인자:직위 직급 성명

[별지 제18-1호서식]

장 비 목 록

행 정 장 비 목 록

장비명	명 단위 규격	규격 수량	상태			비고	
78 H 3	인기		Π Ϥ Τ	7年 下げ	신품	중고	사용불가

※ 내역도 별도 실·국·과별 장비대장과 같음

(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)

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확인자 : 직 위 직 급

성 명

(1)

[별지 제18-2호서식]

장 비 목 록

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

장비명	단위	규격	규견	ユガ	ユガ	그거	그거 스라		상태		비고
<u> </u>	딘게		수량	신품	중고	사용불가	11.17				

※ 내역도 별도 실·국·과별 장비대장과 같음

(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담당관·국·과별 명세 별첨)

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확인자 : 직 위 직 급

성 명

(1)

[별지 제19호서식]

차 량 목 록

차종	차량번호	취득일자	사용연료	사용자	비고

위 사실을 확인함

. . .

[별지 제20-1호서식]

재 고 물 품 조 서

유 류 수 불 조 서

유종별	단 위	규 격	수입량	불출량	재고량	용 도	취급부서

※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확인자 : 직 위 직 급 성 명

(1)

[별지 제20-2호서식]

재 고 물 품 조 서

약 품 수 급 조 서

국과별	구과별 품명 단위 규 ²		규격	대장상수량			청계고	과부족	비고
국 각 현	立る	인케	11/4	수입	불출	잔량	1 원제고	475	비쓰

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확인자:직위 직급 성명

[별지 제20-3호서식]

재 고 물 품 조 서

양 곡 수 불 현 계 표

품명	단위	단량	고 자케 ㅋ		수량		비고
五日	선계	[단당	포장재료	대장상	실재고	과부족	비끄

※ 재고 증명 별첨

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확인자 : 직 위 직 급 성 명

(1)

[별지 제20-4호서식]

재 고 물 품 조 서

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

실과별	자재명	단위	규격		수량		보관장소
년 각 일	^F^I 7	인기	114	대장상	실재고	과부족	上せる公

※ 재고 증명 별첨

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[별지 제21호서식]

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

물자명	단위	규격		수량		비축장소	관리부서
호사성	인기	11年	수입	불출	잔량	미국경오	선 년

※ 재고증명 별첨

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. . .

[별지 제22호서식]

재 산 조 서

		7 H	토	지	건	물	7]	타
		구분	필지	면적	동수	면적	필지	면적
		합 계						
		소 계						
공		계						
유	행정재산	공용재산						
	재 산	공공용재산						
재		기업용재산						
산	보 톳	보존재산						
	보통재산	잡종재산						
	소 계							
국	_	계						
유	행정재산	공용재산						
	재 산	공공용재산						
재	재 기업용재산							
산	j	코 존 재 산						
	7	잡 종 재 산						

※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. . . .

[별지 제23-1호서식]

채 권ㆍ채 무 조 서

채 권 조 서

실과별	건명			채권	채무자	
결과별	신명	금액	발생일	소멸일자	목적또는사유(조건)	イオークイ

※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확인자 : 직 위 직 급 성 명

[별지 제23-2호서식]

채 권ㆍ채 무 조 서

채 무 조 서

일자별	건명	목적 또는 용도	금액	기채 이율 및 조건	상환 기간	기상환액 (이자/원금)	잔액 (이자/원금)	채권자	주관 부서

위 사실을 확인함

[별지 제24-1호서식]

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

세 입 예 산 현 계 표

회계별	세입예산액	징수결정액	수납액	과오반납액	불납결손액	비고

- ※ 잔고증명 별첨
- 위 사실을 확인함

확인자 : 직 위 직 급 성 명

[별지 제24-2호서식]

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

세 출 예 산 현 계 표

회계별	예산액	수입액(세입)①	지출액②	잔액① - ②	비고

- ※ 잔고증명 별첨
- 위 사실을 확인함

[별지 제24-3호서식]

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

소관별	회계별	예산배정액	자금영달액	지출액	예산잔액	파금잔액	비고
계							

※ 잔고증명 별첨

위 사실을 확인함

확인자 : 직 위 직 급 성 명 ①

[별지 제25호서식]

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

구분	수입	지출	잔액	예금종류	비고
계					

※ 잔고증명 별첨

위 사실을 확인함

[별지 제26호서식]

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

	예산과목		예산액	영달		집행		비고
항	세항	목	예간액	금액	미수령액	금액	잔액	비끄
계								

※ 잔고증명 별첨

위 사실을 확인함

확인자 : 직 위 직 급

성 명

[별지 제27호서식]

적 립 금 조 서

	종별	금액	기간	이율	통장번호	예금주	예치은행	관리부서
l								

※ 잔고증명 별첨

위 사실을 확인함

[별지 제28호서식]

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

권종별	수입		불출		잔고		스이모저	मिनोरोर हो	미코리버셔
선정될	매수	금액	매수	금액	수입목적 보관장소	一百	옷 선니구시		

※ 잔고증명 별첨

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확인자 : 직 위 직 급 성 명

[별지 제29호서식]

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

보조 부서별	건명 (내역)	예산액	영달액	미수령액	집행액 (보조액)	잔액	정산액	비고

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[별지 제30호서식]

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

	교부					산	지출과목	
일자	금액	목적	출납공무원	일자	금액	과부족액	세항	목

**	잔고증명	벼처
**	선고등병	22 召

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.

확인자 : 직 위 직 급 성 명 ①

[별지 제31호서식]

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

소관부서	건명(내용)	문제점	조치의견		
<u> </u>	신경(네공)	고 세 숍	인계자	주관부서	

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

. . .